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조웅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418호

다. 발의일자 : 2016. 9. 26

라. 회부일자 : 2016. 10. 4

2. 제안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7조제4항, 제18조)

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라. 과태료 징수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제1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요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16조)

○ 동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직접 손괴하지는 않았지만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 50만원, 자체 보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법률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안 제16조(과태료) 삭제)**.

○ 다만, 제5조 “손괴자의 의무”는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공공재인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신고 의무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단순히 신고가 시장에게 수도시설 손괴 사실을 알리는 선언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 수정(안 제7조제4항, 제18조)

○ 안 제7조제4항과 제18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1]」이 2013년 8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에 대해 동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도 동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 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지방세외수입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인 수도시설의 설치(신설) 이외의 증설, 이설, 개축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인자 부담금과 체납액의 징수는 현행과 같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기 타

○ 제1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의 수정을 통해 조례에 대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와 ~
급수구역내	급수구역 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4. (생 략)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에 따른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별표]
지방세외수입금(제2조 관련)
1. 과징금
   가. ~ 투. (생 략)
2. 이행강제금
   가. ~ 타. (생 략)
3. 부담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 초과부과금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아.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차.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 부과금
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
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조세 외의 금전

「수도법」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